

『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영유아보육법 개정(법률 제11144호, '11.12.31공포, '12. 7. 1 시행),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3909호)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54호, '12. 8. 17 시행)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
- 유사 내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「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통합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,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‘보육시설’을 ‘어린이집’으로, ‘보육시설종사자’를 ‘보육교직원’으로, ‘보육시설의 장’을 ‘어린이집의 원장’으로 수정함. (안 제2조제2호)
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을 낮춤.(안 제5조제2항)
-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명령 항목을 변경된 법과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함(안 제14조, 제15조, 제16조)
- 제5장 보칙을 제8장으로 하여 수정하고,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신설하며, 기존 「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-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영유아보육법령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유사 내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「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」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,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 제2호에 ‘보육시설’을 ‘어린이집’으로, ‘보육시설종사자’를 ‘보육교직원’으로, ‘보육시설의 장’을 ‘어린이집의 원장’으로 수정함.
- 안 제5조제2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을 낮춤
- 안 제14조 ~ 제16조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명령 항목을 변경된 법과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함.
-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신설하며, 기존 「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며, 제5장 보칙을 제8장으로 하여 수정함.

○ 검토결과

-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는 것으로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,
- 보육정책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소통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음.